

【 8 】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0. 3. //

제출자 : 양주군수

□ 개정이유

남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농지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하고,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 주행세 신설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1999. 12. 28 법률 제6060호)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세제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관한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안 제9조)
- 나. 주민세 소득할의 납부에 있어 종전에는 시,군에 별도납부 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하도록 함. (안 제22조의2)
- 다.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종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전액 부과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양수시 자동차의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 (안 제40조)
- 라.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됨에 따라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1조의2, 3, 4, 5)
- 마.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사무처리비 공제 제도를 신설함 (안 제61조)
- 바.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연차별로 상향조정 하도록 함. (안 부칙 제1항 및 제2항)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군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제4호 내지 제7호를 제5호 내지 제8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행세

제9조 중 “②”을 삭제하고,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중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를 “날까지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로 하고, 동항중 제3호를 삭제하며, 제3항중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항중 “제1항 및 제2항” 을 “제1항 내지 제3항” 으로, “1000원” 을 “2000원” 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한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3절의 2 및 제41조의2 내지 제41조의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 절의 2

제41조의2(납세의무자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1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41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 하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1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 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증 과세표준 및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세표준	세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천만원 이하	$12\text{만원} + 400\text{만원 초과금액의 } 100\text{분의 }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72\text{만원} + 1\text{천만원 초과금액의 } 100\text{분의 }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72\text{만원} + 4\text{천만원 초과금액의 } 100\text{분의 } 30$
8천만원 초과	$1\text{천}872\text{만원} + 8\text{천만원 초과금액의 } 100\text{분의 } 40$

제6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형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목) ① (생략)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세 2. 재산세 3. 자동차세 <u><신설></u> 4. 농지세 5. 담배소비세 6. 도축세 7. 종합토지세 ③ 생략	제3조(세목)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 --- 3. --- <u>4. 주택세</u> 5. --- 6. ----- 7. --- 8.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u>지방세심의위원회</u> (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u>지방세심의위원회</u> 를 둔다.
②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u><삭제></u>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⑤ (생략)	③~④ ④~⑤와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⑥ 위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2조(신고납부)</p> <p>① (생략)</p> <p>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u>군수에게 신고납부</u>하여야 한다.</p> <p>1.~2. <생략></p> <p>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결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p> <p>③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신 설></p>	<p>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2조(신고납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날까지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p> <p>1.~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③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신 설></p> <p>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p> <p>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p> <p>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 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 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뒤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p>
제40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②(생략) <u>〈신 설〉</u>	제40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②(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다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 내지 제3항 ----- 2,000원 -----</p>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3절의2 주행세
〈신 설〉	<p>제41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에서 회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p> <p>제41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p>
〈신 설〉	<p>제41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교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 과세표준신고서 사본</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u></p>
3 <신 설>	<p><u>제41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u></p> <p>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p> <p>② 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 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u>안분내역서</u>를 군에 통보하여야 한다.</p>
제47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p>제47조(세율)----- ----- ----- ----- -----</p>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400만원이하	과세표준액의 100분의3	400만원이하	-----
4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6	400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12만원+4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10
1,000만원초과 2,500만원이하	108만원+1,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27	1천만원초과 4천만원이하	72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20
2,5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513만원+2,5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38	4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672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30
5,000만원초과	1,463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50	8천만원초과	1천872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40

제61조(신고납부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각 시·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제61조(신고납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등을 군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第2節 地方稅

●地方稅法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制定	1961 · 12 · 8	法律第 827號
改正	1962 · 12 · 29	法律第1243號
	1963 · 12 · 14	法律第1514號
	1966 · 8 · 3	法律第1803號
	1967 · 10 · 28	法律第1958號
	1967 · 11 · 29	法律第1977號
	1970 · 1 · 1	法律第2149號
	1973 · 3 · 12	법률 제2593호
	1974 · 12 · 27	法律第2743號
	1976 · 12 · 31	法律第2945號
	1976 · 12 · 31	法律第2950號(國有財產法)
	1978 · 12 · 6	法律第3154號
	1979 · 4 · 16	法律第3160號
	1979 · 12 · 28	法律第3174號
	1981 · 1 · 29	法律第3357號(礦業法)
	1981 · 12 · 31	法律第3488號
	1982 · 11 · 29	法律第3572號(韓國觀光公社法)
	1984 · 8 · 8	法律第3752號(產業研究院法)
	1984 · 12 · 15	法律第3754號(行政訴訟法)
	1984 · 12 · 24	法律第3757號
	1986 · 12 · 31	法律第3878號
	1986 · 12 · 31	法律第3910號(觀光振興法)
	1986 · 12 · 31	法律第3912號(自動車管理法)
	1988 · 4 · 6	法律第4007號
	1988 · 12 · 26	法律第4028號
	1988 · 12 · 31	法律第4064號(韓國當地人蔘公社法)
	1988 · 12 · 31	法律第4066號(人蔘協同組合法)
	1988 · 12 · 31	法律第4069號(保險業法)
	1988 · 12 · 31	法律第4073號(國家有功者等團體設立에 관한法律)
	1989 · 6 · 16	法律第4128號
	1990 · 1 · 13	法律第4212號(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1990 · 1 · 13	法律第4216號(產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法律)
	1990 · 4 · 7	法律第4225號
	1990 · 4 · 7	法律第4228號(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1990 · 12 · 31	法律第4269號
	1991 · 1 · 14	法律第4332號(韓國產業人力管理公園法)
	1991 · 12 · 14	法律第4415號
	1993 · 6 · 11	法律第4561號(建設機械管理法)
	1993 · 12 · 27	法律第4611號
	1993 · 12 · 27	法律第4655號(韓國資源再生公社法)
	1994 · 1 · 7	法律第4720號(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1994 · 12 · 22	法律第4794號
	1994 · 12 · 31	法律第4856號(獨立有功者禮遇에 관한法律)
	1995 · 1 · 5	法律第4927號(交通安全振興公園法)
	1995 · 8 · 4	法律第4960號
	1995 · 12 · 6	法律第4995號
	1995 · 12 · 29	法律第5091號(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法律)
	1995 · 12 · 29	法律第5109號(韓國土地公社法)
	1997 · 1 · 13	法律第5291號(國家有功者 등 禮遇 및 치원에 관한法律)
	1997 · 8 · 30	法律第5406號
	1997 · 12 · 13	法律第5454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 따른建築法 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7 · 12 · 24	法律第5474號(勤勞者職業訓練促進法)
	1997 · 12 · 24	法律第5476號(韓國產業人力公園法)
	1998 · 12 · 28	法律第5598號(草納에 관한法律廢止法律)
	1998 · 12 · 31	法律第5615號
	1999 · 2 · 5	法律第5758號(農業·農村基本法)
	1999 · 2 · 5	法律第5759號(農業基盤公社 및 農地管理基金法)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地方稅法

1999. 2. 8 法律第5827號(工業配濱設立에 관한法律)
 1999. 8. 31 法律第6009號
 1999. 12. 28 法律第6060號

第1章 總 則

第1節 通 則

第1條 (定義) ①이法에서 사용하는用語의定義는 다음各號의定하는바에依한다 <改正

67. 11. 29. 73. 3. 12. 74. 12. 27. 76. 12. 31 法2945. 88. 4. 6. 93. 12. 27 法4611. 95. 12. 6>

1. 地方自治團體 : 特別市·廣域市·道·市·郡·區(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地方自治團體의 長 :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 稅務公務員 :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을 말한다.
4. 地方稅 : 特別市·廣域市·道稅 또는 市·郡·區稅를 말한다.
- 4의2. 표준세율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5. 納稅告知書 : 納稅義務者가 納付할地方稅에 對하여 그賦課의 根據가 되는法律 및 當該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의 規定, 納稅義務者의 住所, 姓名, 課稅標準額, 稅率, 稅額, 納期, 納付場所, 納期限까지 未納한境遇에 取하여 질措置 및 賦課의違法 또는 錯誤가 있는境遇의 救濟方法等을 記載한 文書로서 當該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한 것을 말한다.
6. 普通徵收 : 稅務公務員이 納稅告知書를 當該納稅義務者에게 交付하여 地方稅를 徵收하는 것을 말한다.
7. 申告納付 : 納稅義務者가 그 納付할地方稅의 課稅標準額과 稅額을 申告하고 同時に 申告한 稅金을 納付하는 것을 말한다.
8. 特別徵收 : 地方稅의 徵收에 있어서 그 徵收의 便宜가 있는 者로 하여금 徵收시키고 그 徵收한 稅金을 納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特別徵收義務者 : 特別徵收에 依하여 地方稅를 徵收하고 이를 納入할義務를 가진 者를 말한다.
10. 申告納入 : 特別徵收義務者가 그 徵收한地方稅의 課稅標準額 및 稅額을 申告하고 同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地方稅法

第5條 (地方稅의 稅目) ①地方稅는 普通稅와 目的稅로 한다.

②普通稅의 稅目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28>

1. 取得稅

2. 登錄稅

3. 競走・馬券稅

4. 免許稅

5. 住民稅

6. 財產稅

7. 自動車稅

7의2 走行稅

8. 農地稅

9. 丹別消費稅

10. 屠畜稅

11. 総合土地稅

③目的稅의 稅目은 다음 各號와 같다.

1. 都市計劃稅

2. 共同施設稅

3. 事業所稅

4. 地域開發稅

<全文改正 95·12·6>

第5條의2 削除 <95·12·6>

第6條 (地方自治團體의 稅目) ①特別市稅와 廣城市稅는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廣城市의 郡地域에서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道稅를 廣城市稅로 한다. <改正
99·12·28>

1. 普通稅

가. 取得稅

나. 登錄稅

다. 競走・馬券稅

라. 住民稅

마. 自動車稅

(주 115)

바. 走行稅

사. 農地稅

아. 담배消費稅

자. 屠畜稅

2. 目的稅

가. 都市計劃稅

나. 共同施設稅

다. 地域開發稅

②道稅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普通稅

가. 取得稅

나. 登錄稅

다. 免許稅

라. 競走・馬券稅

2. 目的稅

가. 共同施設稅

나. 地域開發稅

③區稅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普通稅

가. 免許稅

나. 財產稅

다. 総合土地稅

2. 目的稅

事業所稅

④市・郡稅(廣域市의 郡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9·12·28>

1. 普通稅

가. 住民稅

나. 財產稅

다. 自動車稅

(주 115)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地方稅法

- 라. 走行稅
- 마. 農地稅
- 바. 담배消費稅
- 사. 屠畜稅
- 아. 綜合土地稅

2. 目的稅

- 가. 都市計劃稅
- 나. 事業所稅

(全文改正 95·12·6)

第6條의2 剷除 <95·12·6>

第7條 (公益等事由로 因한 課稅免除 및 不均一課稅) ①地方自治團體는公益上其他의
事由로因하여課稅를不適當하다고認定할때에는課稅하지아니할수있다

②地方自治團體는公益上其他의事由로因하여必要한때에는不均一課稅를할수있다.

第8條 (受益等事由로因한 不均一課稅및一部課稅) 地方自治團體는그의一部에對하여
특히利益이있다고認定되는事件에對하여서는不均一課稅를하거나또는그의一部에對
하여서만課稅할수있다

第9條 (課稅免除等을爲한條例) 第7條및第8條의規定에依하여地方自治團體가課稅
免除·不均一課稅또는一部課稅를하고자 할때에는行政自治部長官의許可를얻어當該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써定하여야한다 <改正 78·12·6, 98·12·31>

第9條의2 (天災등으로 인한 減免)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天災·地變 기타 大統領
令이 정하는 特殊한 사유가 있어 地方稅의 減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者에 대
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 議會의 議決을 얻어 地方稅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5·12·6>

(本條新設 94·12·22)

第10條 (關係地方自治團體의長의意見이相馳되는境遇의措置) ①地方自治團體의長은
課稅權의歸屬其他이法의規定의適用에있어서他地方自治團體의長과意見을달리하여
協議되지아니할境遇에는道內에關한것은道知事, 數道에걸쳐있는것에關하여는行政
自治部長官에게그에關한決定을請求하여야한다 <改正 67·11·29, 98·12·31>
②道知事또는行政自治部長官이關係地方自治團體의長으로부터第1項의決定의請求
를受理한때에는그請求를受理한날로부터60日以內에이를決定하여遲滯없이그뜻을關

(추 115)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 | |
|---|----------|
| 本金額 또는 出資金額 30億원초과 50億원이하인 法人으로서 課稅基準日 현재 당해 事務所등의 從業員數가 100人을 초과하는 法人 | |
| 資本金額 또는 出資金額 50億원이하 30億원초과 法人으로서 課稅基準日 현재 당해 事務所등의 從業員數가 100人이하인 法人
과 資本金額 또는 出資金額 10億원초과 30億원이하 法人으로서 課稅基準日 현재 당해 事務所등의 從業員數가 100人을 초과하는 法人 | 100,000원 |
| 기타 法人 | 50,000원 |

②所得割의 標準稅率은 다음과 같다.

| 區 分 | 稅 率 |
|---------|-----------------|
| 所 得 稅 割 | 所得稅額의 100분의 7.5 |
| 法 人 稅 割 | 法人稅額의 100분의 7.5 |
| 農 地 稅 割 | 農地稅額의 100분의 7.5 |

③市長・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民稅의 稅率을 第1項第1號나
目・同項第2號 및 第2項의 標準稅率의 100分의 50의 범위안에서 加減調整할
수 있다. <改正 98·12·31>

④및 ⑤削除 <98·12·31>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177條(徵收方法) ①住民稅의 徵收는 第177條의2의 規定에 의한 申告納付와 第
179條의3의 規定에 의한 特別徵收方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普通徵收의 方
法에 의한다. <改正 93·12·27 法4611>

②住民稅를 普通徵收의 方法에 의하여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均等割 및 所得割
의 合算額을 同時에 賦課한다. 다만、市長・郡守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均等割과 所得割을 각각 賦課할 수 있다.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177條의2(申告納付) ①法人稅割의 納稅義務者는 第178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
된 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場 所在地 市・郡別로 按分計算
하여 당해 事業年度 종료일부터 120日(法人稅法 또는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稅額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이 決定 또는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 告知書의 納付期限,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그 延長된 申告期間의 滿了日,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부터 각각 30일)내에 관할 市長・郡守에게 申告納付하여야 한다. 다만, 更正 또는 修正申告로 인하여 事業年度別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總稅額이 낭초에 決定 또는 신고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歸屬事業年度에 불구하고 更正告知日 또는 修正申告日이 속하는 事業年度分 法人稅割에 加減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6, 97・8・30>

②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第178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稅額(特別徵收稅額을 제외한다)을 다음 各號에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所得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97・8・30>

1.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追加納付稅額을 修正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
2. 所得稅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豫定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期間의 滿了日
3. 所得稅法에 의한 決定 또는 更正으로 追加納付稅額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滿了日
4. 所得稅法에 의하여 所得稅를 신고납부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滿了日

②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第178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稅額(特別徵收稅額을 제외한다)을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날까지 第177條의 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97・8・30, 99・12・28 : 施行日 2001・5・1>

1.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追加納付稅額을 修正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
2. 所得稅法에 의하여 让渡所得稅를豫定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期間의 滿了日
3. 削除 <99・12・28>
4. 所得稅法에 의하여 所得稅를 신고납부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滿了日

③法人稅割・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納付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納付稅額이 第178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稅額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에 미달할 때에는 第178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稅額 또는 그 不足稅額에 100分의 20을 加算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方法에 의하여 徵收한다.

③法人稅割의 納稅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納付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告納付稅額이 第178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稅額에 미달할 때에는 第178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稅額 또는 그 不足稅額에 100分의 20을 加算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方法에 의하여 徵收한다. 〈改正 99·12·28 : 施行日 2001·5·1〉

④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가 第177條의 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을 申告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納付稅額이 第178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稅額에 미달할 때에는 第178條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한 稅額 또는 그 不足稅額에 100分의 20을 加算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方法에 의하여 徵收한다. 〈新設 99·12·28 : 施行日 2001·5·1〉

(全文改正 94·12·22)

第177條의 3 (修正申告納付) ①納稅義務者가 第177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納付한 法人稅割의 市·郡別按分計算稅額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法人稅割을 申告納付한 날부터 60日내에 이를 修正申告納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正申告納付를 하는 때에는 追加納付稅額을 납부하여야 하며, 還付받을 稅額에 대하여는 申告와 동시에 還付申請을 하거나 다음 年度分 法人稅割에서 還付받을 稅額을 공제하고 申告納付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正申告納付로 인하여 追加納付하는 稅額에 대하여는 第177條의 2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賦課하지 아니하며, 還付하는 稅額에 대하여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還付利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4·12·22)

第177條의 4 (所得稅割의 申告納付 및 賦課告知) ①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國稅基本法 또는 所得稅法에 의하여 所得稅를 申告·確定申告 또는 修正申告하는 때에는 그 所得稅割을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관할稅務署長에게 함께 申告하고, 所得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特別市·廣域市의 경우에는 区廳長,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稅務署長이 國稅基本法 또는 所得稅法에 의한 更正·決定등에 따라 賦課告知

(주 115)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方法에 의하여 所得稅(所得稅法 第81條 및 第115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포함한다)를 徵收하는 경우 그 所得稅割은 第17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所得稅賦課의 예에 따라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所得稅와 함께 賦課告知한다.

③稅務署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의 申告를 받거나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告知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末日까지(所得稅法 第70條 내지 第72條 및 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의 경우에는 당해年度 7月末까지)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所得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그 內譯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稅務署長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거나 賦課告知한 所得稅割의 課稅標準이 된 所得稅를 還給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末日까지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書式에 의하여 所得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그 內譯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당해 所得稅割을 환부하여야 한다.

⑤稅務署長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의 신고를 받거나 賦課告知하는 경우 市長・郡守가 신고를 받거나 賦課告知한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99·12·28 : 施行日 2001·5·1)

第178條 (所得割의 計算方法) ①所得割은 所得稅法・法人稅法 또는 이 法의 農地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거나 決定・更正된 所得稅・法人稅(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農地稅로서 納稅義務者가 납부하여야 할 稅額의 總額에 第176條第2項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다. 다만, 第179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徵收된 稅額과 第175條의 規定에 의하여 隨時賦課된 稅額은 이를 公제한다.

②所得稅法・法人稅法 또는 이 法의 農地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所得稅・法人稅・農地稅의 決定・更正 또는 所得稅法 第85條의2와 法人稅法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으로 인하여 稅額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決定・更正 또는 還給 稅額에 따라 所得割의 稅額을 還付 또는 追徵한다. <改正 98·12·31>

(全文改正 94·12·22)

第179條 (少額不徵收) 住民稅(特別徵收分을 제외한다)의 稅額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住民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改正 79·12·28, 94·12·22, 98·12·31>

(추 115)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179條의2 削除 <94·12·22>

第179條의3 (特別徵收) ①所得稅法·法人稅法 또는 이 法의 農地稅에 관한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를 源泉徵收할 경우 또는 農地稅를 特別徵收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特別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 또는 特別徵收할 所得稅額·法人稅額·農地稅額에 第17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稅額(이하 “特別徵收稅額”이라 한다)을 所得稅·法人稅 또는 農地稅와 동시에 特別徵收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과 이 法의 農地稅에 관한 規定에서의 源泉徵收義務者와 特別徵收義務者를 住民稅의 特別徵收義務者로 한다.

②特別徵收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徵收稅額을 徵收하였을 경우에는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管轄 市·郡에 納入하여야 한다. 다만, 所得稅法 第128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半期別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納入할 수 있다. <改正 95·12·6, 99·12·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稅의 特別徵收義務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할 稅額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내에 納入하지 아니하거나 未達하게 納入한 경우에는 그 納入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特別徵收義務者로부터 徵收한다. 다만,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와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가 特別徵收義務者인 경우에는 義務不履行을 理由로 하는 加算稅는 이를 加算하지 아니한다.

④所得稅法 第149條 내지 第153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으로부터 所得稅를 徵收하여 政府에 納付하는 경우에는 그 納付하는 稅額에 第17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適用하여 算定한 金額을 그 組合員으로부터 住民稅로 徵收하여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管轄 市長·郡守에게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納稅組合이 徵收하였거나 徵收할 稅額을 期限내에 納入하지 아니한 때 또는 未達하게 納入한 때에는 納入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未達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納稅組合으로부터 徵收한다. <改正 97·12·13>

(本條新設 76·12·31 法2945)

(총 115)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第179條의4 (稅額通報) 政府가 所得稅法·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를 決定 또는 更正을 하거나 申告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月이내에 納稅地를 管轄하는 市長·郡守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81·12·31, 94·12·22>

稅務署長이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을 하거나 申告 또는 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月이내에 納稅地를 管轄하는 市長·郡守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通報하여야 한다. <改正 81·12·31, 94·12·22, 99·12·28; 施行日 2001·5·1>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179條의5 (徵收交付金) 市·郡은 第179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稅를 特別徵收하여 納入한 納稅組合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交付金을 交付할 수 있다.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179條의6 削除 <94·12·22>

第2節 財產稅

第1款 通 則

第180條 (定義) 財產稅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에 定하는 바에 依한다. <改正 67·11·29, 73·3·12, 74·12·27, 76·12·31 法2945, 84·12·24, 86·12·31 法3878, 88·12·26, 89·6·16, 90·12·31, 93·6·11, 94·12·22>

1. 削除 <89·6·16>

2. 建築物

第104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築物 및 建物과 構築物의 特수한 附帶設備를 제외한다.

3. 削除 <94·12·22>

4. 선 박

제10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을 말한다.

5. 航空機

第104條第2號의4의 規定에 의한 航空機를 말한다.

6. 削除 <76·12·31 法2945>

7. 財產稅課稅臺帳

(총 115)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權 地方稅法

建築物・船舶 및 航空機 課稅臺帳을 말한다.

第181條 (課稅對象등) ①財產稅는 市・郡・區안에 所在하는 建築物・船舶 및 航空機(이하 “財產”이라 한다)에 대하여 賦課한다.

②財產稅의 納稅地는 다음 각號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建築物 : 建築物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郡・區

2. 船舶 : 船泊法에 의한 船籍港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郡・區. 다만, 船籍港이 없는 船舶의 경우에는 定聚場 所在地(定聚場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船舶 所有者的 住所地)를 관할하는 市・郡・區

3. 航空機 : 航空法에 의한 登錄原簿에 기재된 定置場의 所在地(航空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한 航空機의 경우는 航空機 所有者的 住所地)를 관할하는 市・郡・區

(全文改正 99·12·28)

第182條 (納稅義務者) ①財產稅 課稅基準日 현재 財產稅課稅臺帳에 貢產의 所有者로 登載되어 있는 者는 財產稅를 납부할義務가 있다. 다만, 權利의 讓渡・都市計劃事業의 施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財產稅課稅臺帳에 登載된 者의 權利에 變動이 생겼거나 財產稅課稅臺帳에 登載가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실상 所有者が 財產稅를 납부할義務를 진다. (改正 89·6·16)

②所有權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所有權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財產稅를 납부할義務를 진다.

③削除 (90·12·31)

④國家・地方自治團體 및 地方自治團體組合과 財產稅 課稅對象物件을 年賦로 買賣契約을 체결하고 그 財產의 使用權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買受契約者가 財產稅를 납부할義務를 진다. (改正 89·6·16, 95·12·6)

⑤信託法에 의하여 受託者名義로 登記・登錄된 信託財產에 대하여는 委託者가 財產稅를 납부할義務를 진다. 이 경우 受託者は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管理人으로 본다. (新設 93·12·27 法4611)

⑥相續이 開始된 財產으로서 相續登記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所有者를 申告하지 아니한 때에는 行政自治部들이 정하는 주된 相續者가 財產稅를 납부할義務를 진다. (新設 94·12·22, 98·12·31)

(全文改正 86·12·31 法3878)

(주 115)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②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期마다 늦어도 納期開始 5日전에 그 期分의 納稅告知書를 發付하여야 한다. 다만, 自動車를 新規登錄 또는抹消登錄하는 경우와 課稅對象 自動車가 非課稅 또는 減免對象으로 되거나, 非課稅 또는 減免對象 自動車가 課稅對象으로 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수시로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3·12·27 法4611, 94·12·22, 97·8·30>

③納稅義務者가 年稅額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각號의 기간중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稅額(일시에 납부하는 納期限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稅額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年稅額으로 申告納付할 수 있다. <新設 88·12·26, 93·12·27 法4611, 95·8·4, 98·12·31>

1. 1月중에 申告納付하는 경우 : 1月 16日부터 1月 31일까지
2. 第1期分 納期중에 申告納付하는 경우 : 6月 16日부터 6月 30일까지
3.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分割納付期間에 申告納付하는 경우 : 3月 16일부터 3月 31일까지 또는 9月 16일부터 9月 30일까지

④年稅額이 10萬원이하의 自動車稅額에 대한 自動車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期分의 賦課時 全額을 賦課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第2期分稅額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年稅額으로 한다. <新設 90·12·31, 93·12·27 法4611, 95·8·4>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196條의7 (承繼取得時의 納稅義務) ①第196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期間中에 賣買・贈與등으로 인하여 自動車를 承繼取得한 者가 自動車所有權移轉登錄을 하는 때에 所有期間에 따른 自動車稅 日割計算申請을 하는 경우 同條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수시로 賦課하여야 한다. 다만, 讓受人の 경우에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納期가 있는 달에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日割計算申請은 自動車所有權移轉登錄을 申請하는 때에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申請書에 所有權變動事實을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첨부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③自動車를 賣買・贈與등으로 承繼取得한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日割計算申請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期分의 自動車稅(第196條의6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隨時賦課한 自動車稅를 제외한다)中 讓渡인이 所有한 기간에 해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당하는 自動車稅의 納稅義務를 承繼한다. 다만, 第196條의6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納期가 있는 달의 1日 현재의 所有者에게 自動車稅의 納稅義務가 成立한 이후에 自動車를 賣買・贈與등으로 承繼取得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99·12·28)

第196條의8 (隨時賦課時의 稅額計算) ①自動車를 新規登録하거나 抹消登録한 경우에는 市・郡은 그 取得한 날 또는 사용을 廢止한 날이 속하는 期分의 自動車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日割計算한 金額을 그 稅額으로 하여 각각 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94·12·22>

②課稅對象 自動車가 非課稅 또는 減免對象으로 되거나, 非課稅 또는 減免對象自動車가 課稅對象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期分의 自動車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日割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新設 97·8·30>

③第196條의7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稅의 日割計算申請을 한 경우에는 讓渡日을 기준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日割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하여 讓渡人과 讓受人에게 각각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年稅額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让渡人の 同意가 있는 때에는 이를 让受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新設 99·12·28>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稅額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自動車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新設 79·12·28, 90·12·31, 97·8·30>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196條의9 削除 <95·12·6>

第196條의10 및 第196條의11 削除 <95·8·4>

第196條의12 (自動車登録證의 回收等) ①自動車稅의 納付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者が 있을 때에는 市長・郡守는 道知事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自動車登録證을 交付하지 아니하거나 交付한 自動車登録證의 回收 및 당해 自動車의 登錄番號板의 領置를 要請하여야 한다. 다만, 自動車登録業務가 市長・郡守에게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그 自動車登録證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自動車登録證의 回收 및 당해 自動車의 登錄番號板을 領置할 수 있다. <改正 86·12·31 法3912, 94·12·22, 99·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長・郡守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 道知事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③自動車登録證의 回收節次와 自動車登録番號板의 領置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6·12·31 法3912, 99·12·28>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196條의 13 (納稅證明書등의 제시) 自動車管理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
錄(市・道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變更登錄에 한한다) 또는 同法 第12條의 規
定에 의한 移轉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당해 登錄官廳에 自動車稅領收證等 自
動車稅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改正 95·12·6>

(本條新設 93·12·27 法4611)

第196條의 14 (滞納處分) 第196條의 5 내지 第196條의 8에 規定된 自動車에 관한 地
方自治團體의 徵收金을 納付하지 아니하거나 納付한 金額에 不足金額이 있을 때
에는 즉시 滞納處分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196條의 15 (免稅規定의 排除) 다른 法律中에 規定된 租稅의 免除에 관한 規定
은 自動車稅에 關한 地方自治團體의 徵收金에 대하여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
다.

(本條新設 76·12·31 法2945)

第3節의 2 走行稅

第196條의 16 (納稅義務者등) 走行稅는 非營業用 乘用自動車에 대한 自動車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郡에서 挥發油・輕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이하 이
節에서 “課稅物品”이라 한다)에 대한 交通稅의 納稅義務가 있는 者(交通稅法 第
3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를 말한다)에게 賦課한다.

(本條新設 99·12·28)

第196條의 17 (稅率) 走行稅의 稅率은 課稅物品에 대한 交通稅額의 1,000分의 32로
한다.

(本條新設 99·12·28)

第196條의 18 (申告納付등) ①走行稅의 納稅義務者는 交通稅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稅의 納付期限내에 交通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申告
納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交通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를 각 市・郡
이 賦課할 走行稅의 特別徵收義務者로 본다.

②走行稅의 納稅義務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納付를 하지 아니하거나 申
告納付稅額이 算出稅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特別徵收義務者는 算出稅額 또
는 不足稅額에 100分의 10을 加算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方法에
의하여 徵收한다.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③特別徵收義務者는 徵收한 走行稅(그 利子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5日까지 市・都別 自動車稅 徵收稅額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按分基準 및 方법에 따라 각 市・郡에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特別徵收義務者는 徵收・納入에 따른 事務處理費등을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市・郡에 納入하여야 할 稅額에서 공제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28)

第196條의 19 (異議申請등의 特例) ①走行稅의 賦課・徵收에 대하여 異議申請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第196條의 18의 規定에 의한 特別徵收義務者를 그 處分廳으로 본다.

②走行稅의 過誤納金이 발생된 경우에는 特別徵收義務者가 이를 환부하고 해당 市・郡에 納入하여야 할 稅額에서 이를 공제한다.

(本條新設 99·12·28)

第196條의 20 (交通稅法의 準用) 走行稅의 賦課・徵收와 관련하여 이 節에 規定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交通稅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第196條의 18第 1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徵收義務者를 交通稅法의 規定에 의한 稅務署長 또는 稅關長등으로 본다.

(本條新設 99·12·28)

第4節 農地稅

第1款 通 則

第197條 (定義) 農地稅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 農地 : 地籍公簿上의 地目에 불구하고 벼와 特殊作物(이하 이 節에서 “農作物”이라 한다)을 栽培하는 土地와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土地를 말한다.
- 收入金額 : 農地에서 農作物을 栽培하거나 農作物을 栽培하게 함으로 인하여 收入한 또는 收入할 금액의 合計額을 말한다.
- 農地所得金額 : 農地로부터 얻은 收入金額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必要經費를 控除한 금액을 말한다.
- 特殊作物 : 果樹・人蔘・煙草・蔬菜・苗木(觀賞樹를 포함한다)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物을 말한다.

(全文改正 84·12·24)

第198條 (納稅義務者) ①農地에서 農作物을 栽培하거나 農作物을 栽培하게 함으로 인하여 얻은 所得(이하 이 節에서 “農地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者는 農地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郡의 農地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②2人이상이 共同으로 農地所得을 얻은 경우에는 그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率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②收入金額은 수확한 農作物의 實地 販賣收入金으로 하되, 販賣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農作物을 原料로 製品을 製造・加工하여 販賣하는 경우에는 수확 당시의 去來時價를 基準으로 한다.

③收入金額의 計算에 있어서 收入하였거나 收入할 금액의 범위・計算方法・歸屬年度 또는 確定時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84·12·24)

第208條 (必要經費의 計算) ①農地所得金額을 計算할 경우에 必要經費로 算入하는 금액은 당해 課稅期間의 收入金額을 위하여 투하된 費用의 合計額으로 한다.

②당해 課稅期間전의 收入金額에 대응하는 費用으로서 당해 課稅期間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課稅期間전에 必要經費로 計上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 課稅期間의 必要經費로 본다.

③必要經費의 計算에 있어서 그 計算方法・歸屬年度 또는 確定時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84·12·24)

第209條 (基礎控除) 農地所得이 있는 納稅義務者에 대하여는 農地所得金額에서 年 560萬원을 控除한다. 다만, 第20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月數(15日이상의 日數는 1月로 본다)로 計算한 금액을 控除한다. <改正 88·12·26, 91·12·14>

(全文改正 84·12·24)

第210條 (稅率) 農地稅의 稅額은 課稅期間중의 課稅標準에 다음의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改正 99·12·28>

〈課稅標準〉

〈稅率〉

400萬원이하

課稅標準額의 100分의 3

400萬원초과 1千萬원이하

12萬원 + 400萬원 초과금액의 100分의 10

1千萬원초과 4千萬원이하

72萬원 + 1千萬원 초과금액의 100分의 20

(총 115)

第10編 地方制度 第4章 地方財政・地籍 地方稅法

| | |
|---------------|-------------------------------|
| 4千萬원초과 8千萬원이하 | 672萬원 + 4千萬원 초과금액의 100分의 30 |
| 8千萬원초과 | 1千872萬원 + 8千萬원 초과금액의 100分의 40 |

(全文改正 90·12·31)

第211條 (稅額計算) ① 2이상의 市·郡에 있는 農地로부터 農地所得을 얻은 納稅義務者에 대하여는 第20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에 第210條의 稅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稅額을 각 市·郡에 있는 農地에서 생기는 農地所得金額의 比率로 按分한 금액을 해당市·郡에 대한 農地稅 算出稅額으로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計算의 節次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行政自治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31>

(全文改正 84·12·24)

第212條 (少額不徵收) 農地稅의 算出稅額이 2,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改正 90·12·31, 98·12·31>

(全文改正 84·12·24)

第3款 申告·調查決定 및 徵收

第213條 (農地所得金額 中間申告 및 調查決定) ① 農地稅의 納稅義務者는 農作物이 그 종류별로 수확이 완료되거나 農地所得金額이 확정된 때 또는 農作物을 栽培하게 함으로 인하여 農地所得을 얻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農地所得金額을 農地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郡에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所得金額中間申告가 없거나, 그 申告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市長·郡守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農地所得金額을 調査決定한다.

(全文改正 84·12·24)

第214條 (中間豫納) ① 農地稅의 納稅義務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地所得에 대한 中間豫納稅額을 農地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郡에 납부하여야 한다.

(주 115)

1. 製造 담배가 그 製造場 또는 保稅區域에서 消費되는 때
2. 製造場에 現存하는 製造 담배가 公賣・競賣 또는 破產節次등에 의하여 換價되는 때

(本條新設 88·12·26)

第233條의3 (開業・廢業등의 申告) 製造者 또는 輸入販賣業者가 製造場 또는 輸入販賣業을 開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事務所 所在地(製造場의 경우에는 당해 製造場 所在地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製造場 또는 輸入販賣業을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申告事項의 變更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本條新設 88·12·26)

第233條의4 (廢業時의 在庫 담배의 使用計劃書 제출) 製造者 또는 輸入販賣業者가 第233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廉業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가 所有하고 있는 在庫 담배의 使用計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88·12·26)

第233條의5 (記帳義務) 製造者 또는 輸入販賣業者는 製造 담배의 製造・輸入・賣渡등에 관한 사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帳簿에 記帳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88·12·26)

第233條의6 (申告納付등) ①製造者は 매월 1일부터 末日까지 製造場에서 搬出한 製造 담배에 대한 第228條 및 第229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과 稅率에 따라 算出한 稅額(이하 이 節에서 “算出稅額”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按分基準에 의하여 다음달 末日까지 각 市・郡에 申告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②輸入販賣業者는 매월 1일부터 末日까지 保稅區域에서 搬出한 製造 담배에 대한 算出稅額을 다음달 末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輸入販賣業者の 主事務所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郡에 申告納付하여야 한다. 이 경우 輸入販賣業者の 主事務所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를 輸入製造 담배의 담배消費稅에 대한 각 市・郡의 特別徵收義務者로 본다.

③第 2 項의 特別徵收義務者는 徵收한 담배消費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按分基準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 市・郡에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特別徵收義務者는 담배消費稅의 徵收・納入에 따른 事務處理費등을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市・郡에 納入하여야 할 稅額에서 공제할 수 있다. <改正 95·12·6, 99·12·28>

第5章 直接稅

●所得稅法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국세청)

| | | |
|------|------------|------------------------------------|
| 全文改正 | 1994·12·22 | 法律第4803號 |
| 改正 | 1995·12·29 | 法律第5031號 |
| | 1995·12·29 | 法律第5108號(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 |
| | 1996·8·14 | 法律第5155號 |
| | 1996·12·30 | 法律第5191號 |
| | 1996·12·30 | 法律第5193號(相續稅 및 贈與稅法) |
| | 1997·1·13 | 法律第5259號(北韓難脫住民의 보호 및 定着支援에 관한 法律) |
| | 1997·1·13 | 法律第5291號(國家有功者 등 禮遇 및 지원에 관한 法律) |
| | 1997·8·28 | 法律第5374號(與信專門金融業法) |
| | 1997·12·13 | 法律第5424號 |
| | 1997·12·31 | 法律第5493號(金融實名去來 및 秘密保障에 관한 法律) |
| | 1998·1·13 | 法律第5503號(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 |
| | 1998·4·10 | 法律第5532號 |
| | 1998·9·16 | 法律第5552號 |
| | 1998·9·16 | 法律第5559號(外國人投資促進法) |
| | 1998·12·28 | 法律第5580號 |
| | 1999·8·31 | 法律第5994號 |

第1章 總 則

第1條 (納稅義務)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法에 의하여各自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1. 國內에 住所를 두거나 1年以上 居所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居住者가 아닌 者(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1. 居住者
2. 非居住者

3. 國內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法에서 정하는 源泉徵收義務者

③ 法人格없는 社團·財團 기타 團體중 國稅基本法 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으로 보는 團體(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의 社團·財團 기타 團體는 이를 居住者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

④ 第1項에 規定하는 住所·居所와 居住者·非居住者的 구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2條 (納稅義務의 범위) ①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所有資產 또는 共同事業에 관한 所得金額을 計算하는 때에는 당해 居住者別로 納稅義務를 진다. 다만,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率이 큰 共同事業者(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에게 合算課稅되는 경우 당해 合算課稅

第20編 内國稅 第5章 直接稅 所得稅法

第7節 課稅標準의 確定申告와 自進納付

第70條 (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① 당해年度의 綜合所得金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綜合所得課稅標準을 당해年度의 다음 年度 5月 1일부터 5月 31일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課稅標準이 없거나 缺損金額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④ 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에 있어서는 그 申告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1. 第50條 또는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人的控除 및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綜合所得金額의 計算의 기초가 된 總收入金額과 必要經費의 計算에 필요한 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3. 不動產貨貸所得金額 또는 事業所得金額을 第160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비치·記帳된 帳簿와 證憑書類에 의하여 計算한 경우에는 企業會計基準을 準用하여 작성한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와 그 附屬書類 및 合計殘額試算表와 調整計算書. 다만, 第160條第 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帳을 한 事業者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便帳簿所得金額計算書
4. 第28條 내지 第32條에 의하여 必要經費를 計上한 때에는 그 明細書
5. 第160條第 3項의 規定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이하 第81條에서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第160條의 第 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證憑書類와의 證憑을 受取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領收證受取明細書(이하 “領收證受取明細書”라 한다)
6. 不動產貨貸所得金額 또는 事業所得金額을 第160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비치·記帳한 帳簿와 證憑書類에 의하여 計算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推計所得金額計算書
- ⑤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申告書 기타 書類에 미비 또는 誤謬가 있는 때에는 그 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居住者가 第61條第 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配偶者の 資產所得을 合算하여 綜合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配

第20編 内國稅 第5章 直接稅 所得稅法

偶者와 連署하여 하나의 申告書로 申告를 하여야 한다.

- 第71條 (退職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①당해年度의 退職所得金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退職所得課稅標準을 당해年度의 다음 年度 5月 1일부터 5月 31일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退職所得課稅標準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第146條 내지 第1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退職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 第72條 (山林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 ①당해年度의 山林所得金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山林所得課稅標準을 당해年度의 다음 年度 5月 1일부터 5月 31일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山林所得課稅標準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山林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④第70條第4項第2號 내지 第6號 및 第5項의 規定은 山林所得 課稅標準確定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12·28>

- 第73條 (課稅標準確定申告의 예의) ①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居住者는 第70條 및 第7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所得에 대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6·12·30 法5191>
1. 勤勞所得만이 있는 居住者
 2. 退職所得만이 있는 居住者
 3. 資產所得만이 있는 資產合算對象配偶者
 4. 勤勞所得과 退職所得만이 있는 居住者
 5. 勤勞所得과 資產所得만이 있는 資產合算對象配偶者
 6. 退職所得과 資產所得만이 있는 資產合算對象配偶者
 7. 勤勞所得·退職所得과 資產所得만이 있는 資產合算對象配偶者
 8. 第1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事業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만이 있는 者
 9. 第8號의 所得과 退職所得만이 있는 者
 10. 第8號의 所得과 資產所得만이 있는 資產合算對象 配偶者
 11. 第8號의 所得·退職所得과 資產所得만이 있는 資產合算對象 配偶者

第20編 内國稅 第5章 直接稅 所得稅法

한 후 그 決定 또는 更正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
를 다시 更正한다.

第81條 (加算稅) ①居住者가 第70條 내지 第72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稅額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申告하여야 할所得金額에 미달하게 申告한 때에는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당해所得金額 또는 申告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所得金額이 綜合所得金額·退職所得金額 또는 山林所得金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算出稅額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申告한所得金額에 대하여 所得稅가 源泉徵收된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項에서 “加算稅對象金額”이라 한다)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다만, 複式簿記義務者가 事業所得에 대한 稅額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算出稅額이 없거나 加算稅對象金額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事業者の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收入金額의 1萬分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②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隨時賦課한 경우 당해 稅額 및 收入金額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複式簿記義務者가 第70條第4項第3號의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合計殘額試算表와 調整計算書를 稅額標準確定申告書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적용에 있어서 稅額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居住者가 第76條의 規定에 의한所得稅額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稅額에 대하여 金融機關의 延滞貸出利子率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率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⑤第164條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할 者가 당해 支給調書를 그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支給調書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分의 지급금액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⑥第5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者가 불분명한 경우의 加算稅의 적용은 당해 支給調書에 의한 支給日이 속하는 年度의 第70條 내지 第72條 또는

(주 103)

第20編 内國稅 第5章 直接稅 所得稅法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期間 終了日부터 1年내에 한한다.

⑦複式簿記義務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다만, 附加價值稅法 第2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稅가 賦課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6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計算書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計算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第2號의 規定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를 第16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合計表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이 錯誤로 기재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未來事實이 확인되는 分의 賣出 또는 買入價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複式簿記義務者가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第160條의2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證憑書類의 證憑을 受取한 경우에는 그 受取分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다만, 第160條의2第2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複式簿記義務者가 第70條第4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領收證受取明細書를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領收證受取明細書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分의 지급금액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⑩事業者(大統領令이 정하는 小規模事業者를 제외한다)가 第160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을 비치·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한 所得金額이 記帳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綜合所得金額 또는 山林所得金額에 대하여 그 記帳하지 아니한 당해 所得金額 또는 記帳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所得金額이 차지하는 比率을 算出稅額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추 112)

第20編 内國稅 第5章 直接稅 所得稅法

⑩第5項·第7項·第8項 및 第9項의 規定은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⑪동시에 第1項과 第10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加算稅만을 적용하고, 第1項과 第10項의 加算稅額이 같은 경우에는 第1項의 加算稅만을 적용한다.

⑫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申告不誠實加算稅”라 하고,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納付不誠實加算稅”라 하며, 第5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報告不誠實加算稅”라 하고, 第8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證憑不備加算稅”라 하며, 第9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領收證受取明細書未提出加算稅”라 하고, 第10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無記帳加算稅”라 한다.

(全文改正 98·12·28)

第82條 (隨時賦課決定) ①居住者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管轄稅務署長은 수시로 그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를 賦課(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改正 98·12·28>

1. 정당한 사유없이 第16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長期間休業 또는 廃業상태에 있는 때로서 所得稅 逋脫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第1號외에 租稅를 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第16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廃業申告를 한 경우로서 당해 事業者가 隨時賦課를 받고자 申請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事業開始日부터 第1項 各號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隨時賦課期間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所·居所 또는 事業場의 移動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의 納稅義務있는 者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④第1項第3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隨時賦課의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8·12·28>

(주 103)

第20編 内國稅 第5章 直稅稅 所得稅法

計算한 금액에서 이에 申告한 譲渡差益豫定申告算出稅額을 공제한 것을 그 算出稅額으로 한다.

③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譲渡差益에서 差減하는 譲渡所得基本控除는 당해年度중 먼저 譲渡하는 資產의 譲渡所得金額에서부터 順次로 공제한다.

第108條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 ①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와 함께 自選納付를 하는 때에는 그 算出稅額에서 납부할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第165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不動產讓渡申告를 하여야 할 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法50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라 한다.

第109條 (資產讓渡差益의 決定) ①居住者が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 또는 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自選納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譲渡差益이나 납부한 稅額에 脣漏 또는 誤報가 있는 때에는 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즉시 譲渡差益 또는 稅額을 決定하거나 更正하고 大統領廳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居住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申告納付에 있어서 申告한 資產讓渡差益과 납부한 稅額이 정당한 때에는 그 申告에 의하여 資產讓渡差益과 稅額을 決定한다.

第8節 譲渡所得에 대한 確定申告와 稅額納付

第110條 (讓渡所得稅 稅額標準確定申告) ①당해年度의 譲渡所得金額이 있는 居住者は 그 譲渡所得課稅標準을 당해年度의 다음 年度 5月 1일부터 5月 31일까지 大統領廳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年度의 稅額標準이 없거나 缺損金額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讓渡所得稅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④資產讓渡差益豫定申告를 한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所得에 대한 譲渡所得稅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讓渡所得稅課稅標準確定申告에 있어서는 그 申告書에 譲渡所得金額의 計算의 기초가 된 譲渡價額과 必要經費의 計算에 필요한 書類로서 大統領廳이 정하는 것을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申告書 기타 書類에 이비 또는 誤報가 있는 때에는 그 补正을 요구할 수 있다.

第20編 内國稅 第5章 直接稅 所得稅法

第114條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更正 및 통지) ①納稅地 管轄稅務署

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讓渡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第110條의 規定에 의한 居住者의 申告에 의하여 決定한다. 다만, 居住者가 让渡所得稅 課稅標準確定申告 또는 让渡所得稅確定申告自進納付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申告한 課稅標準이나 납부한 稅額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때에는 그 課稅標準과 稅額을 調査하여 決定한다.

②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할 수 없거나 決定후 그 脱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課稅標準과 稅額을 調査하여 決定 또는 更正한다.

③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한 課稅標準과 稅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매년 8月 1日부터 8月 16일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居住者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 또는 更正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第115條 (讓渡所得稅에 대한 加算稅) ①居住者가 让渡所得稅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申告하여야 할 所得金額에 미달하게 申告한 때에는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당해 所得金額 또는 申告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所得金額이 让渡所得金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算出稅額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申告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②居住者가 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让渡所得稅額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納付不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③讓渡所得稅 課稅標準 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居住者가 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도 第114條의 規定에 의한 追加納付稅額(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16條 (讓渡所得稅의 徵收) ①納稅地 管轄稅務署長은 第114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年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한 경우에 第93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让渡所得 總決定稅額이 다음 각號의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 交通稅法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국세청)

| | | |
|----|----------------|------------------|
| 制定 | 1993 - 12 - 31 | 法律第4667號 |
| 改正 | 1994 - 12 - 22 | 法律第4809號(特別消費稅法) |
| | 1995 - 12 - 29 | 法律第5035號 |
| | 1998 - 1 - 8 | 法律第5494號 |
| | 1998 - 9 - 16 | 法律第5554號 |
| | 1999 - 12 - 3 | 法律第6032號(特別消費稅法) |

第1條 (目的) 이 法은 道路 및 都市鐵道등 交通施設의 확충에 소요되는 財源을 확보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課稅對象과 稅率) ① 交通稅를 賦課할 物品(이하 "課稅物品"이라 한다)과 그 稅率은 다음과 같다. (改正 95 - 12 - 29, 98 - 1 - 8, 98 - 9 - 16)

1. 捜發油와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

리터당 691원

2. 經油 및 이와 유사한 代替油類

리터당 160원

② 課稅物品의 細目과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은 國民經濟의 효율적 運用을 위하여 交通施設投資財源의 調達과 당해 物品의 需給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稅率의 100分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課稅物品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物品의 形태·用途·성질 기타 중요한 特性에 의한다.

⑤ 課稅物品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구분된 2이상의 物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物品의 特性에 따라 이를 판정하고, 그 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用途에 따라 판정하며, 特性과 주된 用途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稅率이 적용되는 物品으로 취급한다.

⑥ 第4項 및 第5項외에 課稅物品의 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條 (納稅義務者)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다.

1.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을 제조하여 摘出하는 者

2.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을 關稅法에 의한 保稅區域(이하 "保稅區域"이라 한다)으로부터 摘出하는 者(關稅法에 의하여 關稅를 납부한 義務가

第20編 内因税 第4章 關稅税 交通稅法

있는 者를 떤다. 이하 같다)

3. 第2號의 경우외에 關稅를 徵收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그 關稅를 납부할 義務가 있는 者

第4條 (課稅時期) 交通稅는 課稅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거나 輸入申告를 하는 때에 賦課한다. 다만, 第3條第3號의 物品에 대하여는 關稅法에 의한다.

第5條 (제조등으로 보는 경우) ①製造場외의 場所에서 販賣의 目的으로 課稅物品에 價值增大를 위한 첨가등의 加工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物品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②課稅物品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 것으로 본다.

1. 製造場안에서 사용되거나 消費되는 경우.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製造場안에 남아있는 것으로서 公賣·競賣 또는 破產節次에 의하여 换價되는 경우
3. 課稅物品의 제조를 사실상 廢止한 경우에 製造場안에 남아있는 경우.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管轄稅務署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第6條 (課稅標準) ①交通稅의 課稅標準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1.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가 제조하여 搬出하는 物品은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는 때의 價格

2. 第3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가 保稅區域으로부터 搬出하는 物品은 輸入申告를 하는 때의 價格

3. 第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物品은 당해 關稅를 徵收하는 때의 價格

②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價格에는 당해 物品에 대한 附加價值稅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容器代金과 包裝費用(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③課稅標準이 되는 價格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課稅標準의 申告) ①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は, 매월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한 物品의 物品別 數量 및 價格과 算出稅額·未納稅額·免除稅額·控除稅額·還給稅額·納付稅額등을 기재한 申告書를 다음달 末日까지 製造場을 관할하는 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3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が 保稅區域을 관할하는 稅關長에게

第20編 内國稅 第4章 關稅法 交通稅法

輸入申告를 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第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에 대하여는 關稅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가 第5條第2項第2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당해 申告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의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납부) ①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는 每月分의 交通稅를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의 提出期限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5條第2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의 提出期限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3條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者の 交通稅 납부에 관하여는 關稅法에 의한다.

③課稅物品을 關稅法에 의하여 輸入免許證에 保稅區域으로부터 提出하고자 하는者は 關稅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交通稅額에 상당하는 摆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第9條 (결정과 更正決定)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申告의 내용에 誤謬 또는 脫漏가 있는 때에는 管轄稅務署長 또는 稅關長은 그 課稅標準과 稅額을 결정 또는 更正決定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결정 또는 更正決定은 帳簿 기타 證憑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推計決定을 할 수 있다.

第10條 (隨時賦課) 納稅義務者가 交通稅를 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事業不振 기타의 사유로 休業 또는 繁業한 때에는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수시로 그 課稅標準과 稅額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第9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1條 (加算稅) ①交通稅의 納稅義務者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期限내에 交通稅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납

(주 43)

第2章 關 稅

● 關稅法

소관부처 : 재정경제부(관세청)

| | | |
|------|----------------|--|
| 全文改正 | 1967 · 11 · 29 | 法律第1976號 |
| 改正 | 1968 · 12 · 31 | 法律第2062號 |
| | 1970 · 1 · 1 | 法律第2162號 |
| | 1972 · 12 · 30 | 법률 제2423호 |
| | 1973 · 2 · 5 | 법률 제2469호 |
| | 1974 · 12 · 21 | 法律第2697號 |
| | 1975 · 12 · 22 | 法律第2793號 |
| | 1976 · 12 · 22 | 法律第2928號 |
| | 1978 · 12 · 5 | 法律第3109號 |
| | 1981 · 4 · 13 | 法律第3441號(認可등의整備를 위한行政審士法等의一部改正法律) |
| | 1981 · 12 · 31 | 法律第3478號 |
| | 1981 · 12 · 31 | 法律第3492號(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者와 그職務範圍에 관한法律) |
| | 1983 · 12 · 29 | 法律第3666號 |
| | 1984 · 8 · 7 | 法律第3746號(國稅基本法) |
| | 1984 · 12 · 15 | 法律第3754號(行政訴訟法) |
| | 1984 · 12 · 15 | 法律第3755號(行政審判法) |
| | 1987 · 12 · 4 | 法律第3981號 |
| | 1988 · 12 · 26 | 法律第4027號 |
| | 1990 · 12 · 31 | 法律第4286號 |
| | 1991 · 3 · 8 | 法律第4351號(音聲및비디오物에 관한法律) |
| | 1993 · 12 · 31 | 法律第4674號 |
| | 1994 · 3 · 24 | 法律第4743號(農漁村特別稅法) |
| | 1994 · 12 · 22 | 法律第4813號 |
| | 1995 · 12 · 6 | 法律第4982號 |
| | 1996 · 12 · 30 | 法律第5194號 |
| | 1997 · 8 · 28 | 法律第5374號(與信專門金融業法) |
| | 1997 · 12 · 13 | 法律第5419號 |
| | 1997 · 12 · 13 |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 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
| | 1998 · 12 · 28 | 法律第5583號 |
| | 1999 · 1 · 21 | 法律第5681號(國家情報院法) |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關稅의 賦課 · 徵收 및 輸出入物品의 通關을 適正하게 하여 國民經濟의 發展에 寄與하고 關稅收入의 確保를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輸入”이라 함은 다음 각號의 1에 해당되는 物品을 우리나라에 引取하는 것(保稅區域을 經由하는 것은 保稅區域으로부터 引取하는 것)을 말한다. <改正 88 · 12 · 26, 95 · 12 · 6>

1. 外國으로부터 우리나라에 到着된 物品(外國의 船舶등에 의하여 公海에서 採捕된 水產物등을 포함한다)
 2. 輸出申告가 受理된 物品
- ②이 法에서 “輸出”이라 함은 內國物品을 外國으로 搬出함을 말한다.
- ③이 法에서 “外國物品”이라 함은 外國으로부터 우리나라에 到着된 物品(外國의

(총 108)

第21編 關稅 第2章 關稅 關稅法

출하고, 關稅士등이 당해 書類를 확인한 후 輸出·輸入 또는 返送에 관한 申告를 하는 때에는 稅關長에 대한 당해 書類의 제출은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3·12·31, 95·12·6>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書類의 제출을 생략 또는 간이하게 하거나 輸入申告受理후에 제출하게 한 경우에 稅關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申告人에게 關稅廳長이 정하는 帳簿 기타 關係資料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申告人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95·12·6>

<全文改正 90·12·31>

第139條의2 削除 <95·12·6>

第2款 物品의 檢查

第140條 (物品의 檢查) ①稅關公務員은 輸出入하고자 하는 物品에 대하여 檢查를 할 수 있다.

②關稅廳長은 檢查의 效率을 거두기 위하여 檢查對象·檢査범위·檢査方法등 필요한 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③貨主는 輸入申告를 하고자 하는 物品에 대하여 輸入申告전에 關稅廳長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을 할 수 있다. <改正 90·12·31>

<全文改正 78·12·5>

第141條 (検査場所) ①第98條의2第2項 또는 第140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는 第6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藏置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輸出하고자 하는 物品에 대한 檢査는 당해 物品이 藏置되어 있는 당해 장소에서 행한다. <改正 93·12·31, 95·12·6, 97·12·13 法5419>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稅關長은 효율적인 檢査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稅廳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物品을 保稅區域에 반입하게 한 후 檢査할 수 있다. <新設 93·12·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場所가 指定藏置場 또는 稅關檢査場이 아닌 경우에는 申告人은 財政經濟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3·12·31, 95·12·6, 98·12·28>

<全文改正 78·12·5>

第3款 申告의 처리

第141條의2 (申告의 受理) ①稅關長은 第137條 또는 第138條의2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이 法의 規定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受理하고 申告人에게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 稅關長은 關稅를 납부하여야 할 物品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申告受理전에 납부하여야 할 關稅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1編 關稅 第2章 關稅 關稅法

1. 이 法 기타 法律 또는 條約에 의하여 關稅의 減免 · 徵收期間 연장 또는 分割 納付의 승인을 할 때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
 2. 關稅廳長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行者携帶品을 納稅告知와 동시에 檢查現場에서 搬出承認한 경우
 3. 납부할 關稅를 이미 납부한 경우
 4. 담보제공을 받지 아니하여도 關稅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大統領 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제공생략대상으로 정한 경우
-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受理전에는 運輸機關 · 關稅通路 또는 이 法에 規定된 藏置場所로부터 申告된 物品을 搬出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8·12·28>
- [本條新設 95·12·6]

第141條의3 (申告事項의 보완) 稅關長은 第137條 또는 第138條의2의 規定에 의한 輸出 · 輸入 또는 返送申告書의 기재사항 또는 第139條의 規定에 의한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로서 미비된 사항이 경미하고受理이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稅關長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稅廳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受理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2·6]

第142條 (申告의 取下) ①申告는 正當한 理由가 있는 경우에 限하여 稅關長의 承認을 얻어 取下할 수 있다. 다만, 輸入 또는 返送의 경우에는 運輸機關 · 關稅通路 또는 이 法에서 規定된 藏置場所에서 物品을 搬出한 후에는 取下할 수 없다. <改正 76·12·22, 95·12·6>

②輸出 · 輸入 또는 返送의 申告를 受理한 후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의 取下를 承認하였을 때에는 申告受理의 효력은 壟失된다. <改正 95·12·6>

第142條의2 (申告의 却下) 稅關長은 第137條 및 第138條의2의 申告가 그 要件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詐偽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된 경우에는 당해 輸出 · 輸入 또는 返送의 申告를 却下할 수 있다. <改正 95·12·6>

[本條新設 75·12·22]

第142條의3 (輸出申告受理의 取消) 稅關長은 第6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大統領 숙이 정하는 바에 따라 輸出申告의 受理를 取消할 수 있다.

(全文改正 95·12·6)

第4款 申告受理전 搬出

第143條 (申告受理전 搬出) ①輸入申告를 한 物品을 第141條의2의 規定에 의한 稅關長의 受理전에 그 藏置場所로부터 搬出하고자 하는 者는 납부하여야 할 關稅에 상당하는 搞保를 提供하고 稅關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輸入하거나 第141條의2第2項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改正 81·12·31 法3478, 93·12·31, 95·12·6>

(주 103)

第2節 自動車管理

●自動車管理法

소관부처 : 건설교통부

全文改正 1995. 12. 29 法律第5104號
 改正 1997. 12. 13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 따른 公認會計士法 등의整備에 관한法律)
 1999. 1. 29 法律第5729號
 1999. 4. 15 法律第5968號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안전기준·형식승인·점검·정비·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규격 및 성능등을 말한다.
5.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자동차(신조차 및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 및 그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주 110)

第41編 陸運・航空・觀光 第6章 道路運送 自動車管理法

8.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점검·장비와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 "자동차폐차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폐차 및 그 말소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 (自動車의 종류) ①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원동기의 종류·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第4條 (自動車管理事務의 指導·監督)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에 관한 적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자동차관리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한으로 규정한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도·감독한다. <改正 99·4·15>

第2章 自動車의 登錄

第5條 (登錄)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제47조까지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條 (自動車所有權變動의 效力)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第7條 (自動車登錄原簿)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한다.
 ②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등을 방지하고 그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第8條 (新規登錄) ①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추 110)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전문제정 1996·12·9 건설교통부령 제 83호
 개정 1998·5·26 건설교통부령 제136호
 1998·8·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1999·2·19 건설교통부령 제173호

제 1 장 총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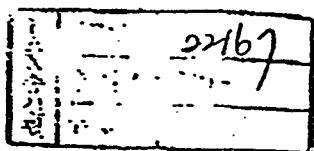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 동차
 3. 화물자동차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 가.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나.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 3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주 109)

1399 신고하여 봄장식품 부리출자.
컴퓨터 2000년문제 우리는 안전한가



경기도 취급 정보통신망

우441-70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예산로 3가 1 / ☎ (033)249 - 2311 / FAX (033)249 - 2319
세정과 과장 최연택 사무관 이혜성 당당자 김지영

<http://www.provin.kyonggi.kr>

문서번호 세정13400-10317

시행일자 1999. 12. 16 (30년)

공개여부 (공개)

받 음 수신처 참조

참 조

| | | | | |
|--------|----|---------------|-------------|-------|
| 선급 | h | h | 지 | 시 |
| 접
수 | 일자 | 1999. 12. 16. | 결
재 | 31063 |
| | 시간 | | | |
| | 번호 | 4400 | | |
| 처리과 | | | ·
공
당 | |
| 담당자 | | | | |
| 심사자 | | 심사일 | | |

제 목 2000년 시행 시·군세 조례 개정(안) 통보

2000년도 시행 개경 시장세법령에 따른 시·군세조례개정(안)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조속한 시일내 개정을 완료하여 2000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
랍니다.

첨부 : 2000년 시행 시·군세조례 개정안 1부. 끝.

경기도 지

전결 세정과장 최연택



받는곳 : 각[세정(세무·부과·시세·재무)과장]

2000年 施行
市・郡稅 條例改正(案)

京 畿 道
(稅 政 課)

시군세 조례 개정사항

1.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따른 정비

- 세제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의 규정이 법적근거가 없어 영 제58조에서 삭제되므로 이에 대한 조례정비
- 행정자치부는 “정책자문위원회”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지방 자치단체별로 검토후 조례 등 반영 필요
※ 별도조례를 제정할 것인지, 지방세조례에 반영할 것인지 검토필요

2. 주민세 소득세 할 신고납부방법 개선에 따른 개정

- 법 제177조의2, 제177조의4 규정(주민세 소득세 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이 개정되어 2001. 5. 1.부터 시행되므로 이에 대한 조례개정

3.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개선에 따른 개정

-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일할계산 금액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할 수 있도록 법 제196조의8의 규정이 개정되므로 이에 대한 조례개정
- 자동차세 일할계산시 소액부징수 금액 상향조정 : 1,000원 미만 → 2,000원미만

4.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

- 법 제196조의16 내지 제196조의18 등 주행세 관련 규정의 신설에 따라 세목, 세율, 납세의무자, 신고납부 등 조례에 규정

5. 농지세 세율 조정에 따른 개정

- 법 제210조의 농지세 세율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6.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 신설에 따른 개정

- 법 제233조의6제3항 후단 신설에 따른 조례개정

7. 7~10인승의 승용자동차 변경, 경과조치 규정신설에 따른 개정

-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및 자동차세의 경과규정을 법 부칙에 신설함에 따른 조례정비

8. 기타 조례개정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정비

신구조문 대비표

(70시(군)세조례)

| 현 행 | 개 정 |
|--|---|
| 제3조(세목) | 제3조(세목) |
|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 ②-----
-----. |
| 1. 주민세 | 1.~3.(현행과 같음) |
| 2. 재산세 | 4. 주행세 |
| 3. 자동차세 | 5.~8.(현행 4.~7호와 같다) |
| 4. 농지세 | |
| 5. 담배소비세세 | |
| 6. 도축세 | |
| 7. 종합토지세 | |
|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 |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
①----- |
| 에 관한 <u>의의신청 또는 과세표</u>
<u>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u>
<u>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u>
<u>하여 시(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u>
<u>(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u>
<u>다)를 둔다.</u> | ----- <u>의의신청을 심의·의결하</u>
<u>기 위하여 시(군)에 지방세심의</u>
<u>위원회를 -----</u>

-----. |
|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 |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과 |

위위원회. 이의신청분과 위원회와
과 세표준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
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위
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
는 10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신고납부)

②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
한 세액(특별징수액을 제외한다)
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납부
터 30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
을 포함한 15인이하

⑥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제21조(신고납부)

② 날까
지 제22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삭 제>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③ 범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
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
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신설>

③ 범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

항 _____

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
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
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
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
하여 징수한다.

<신설>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 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

한 과세표준화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 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 할의 과세표
적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
세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은
당해 소득세 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
계산)

<신설>

③ 자동차 세 과세기간 중에 예예
· 중여 등으로 위하여 자동차 소
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
유기간에 따른 자동차 세 일합계
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

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
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은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
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 설>

<신 설>

④제1항 내지 제3항

----- 2,000원 미만

제3절의2 주행세

제40조의2(납세의무자 등) 주행세

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
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
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
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
한다.

<신 설>

제40조의3(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신 설>

제40조의4(신고납부) 주행세 납세

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하
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
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
고서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
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
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

<신 설>

제40조의5(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둘)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

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

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을산광역

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 을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

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군)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군)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6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제46조(세율)-----

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업무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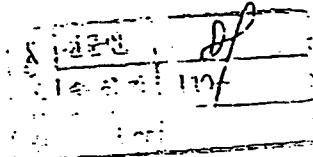
시행일자 : 2000. 1. 18

수신 : 러

참조 : 세무부서 시군세 조례담당주사

발신 : 경기도 세정과

제목 : 시군세 조례개정안 일부 자구 수정 등보



1. 경기도 세정13400-10317('99. 12. 16)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에 의거 통보된 2000년 시행 시군세 조례안중 주행세 신고 남부규정이 1999. 12. 31 공포된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구수정할 사항을 통보하니 조례개정시 반영하기 바랍니다.

| 통보(안) | 수정(안) |
|---|--|
| 제40조의4 (본문 생략)
1. (생략)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
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 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용 | 제40조의4 (본문 생략)
1. (생략)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용. |

첨부 :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공포문 1부. 끝.

2000. 1. 18

경기도 세정과 세정담당 이 해 성

| | | | | |
|----|-----|-------|---|--|
| | | 676-3 | 김 | |
| 금 | 세 | 부 | 세 | |
| 부과 | 재무과 | (공) | 란 | |

양 주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관의 장 |
| 람 | 이 <u>준</u> 3 |

군 보

제 173 호
2000년 1월 24일 (월)

차 래



- 양주군 공고 제17호 양주군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3
- 양주군 공고 제18호 양주군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4



- 양주군 고시 제2000- 5호 유수사용허가 사항고시 5



- 양주군 공고 제2000- 15호 국토이용계획예고및개발계획수립(안) 6
정정공고
- 양주군 공고 제2000- 19호 2000년 재정운영 상황 공개 7

| | | | | | | | | |
|---|--|--|--|--|--|--|--|--|
| 회 | | | | | | | | |
|---|--|--|--|--|--|--|--|--|

발행 : 양주군

편집 : 문화공보실

양 주 군 보

제 173 호

입 법 예 고

양주군 공고 제 17 호

양주군군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 여러분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 주 군 수
2000년 1월 24일

자치법규입법예고

1. 조례제명 : 양주군군세조례증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남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농지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게 하향하고, 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 주행세 신설 및 지역개발세의 세율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의 개정('99.12.28법률 제6060호)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가. 세제분과위원회 및 과세표준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 (안 제9조)
- 나. 주민세 소득할의 납부에 있어 종전에는 시군에 별도 납부하던 것을 앞으로는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 하도록 함 (안 제22조의2)
- 다.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종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양수시 자동차의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을 신청할 경우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하도록 함 (안 제40조)
- 라.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됨에 따라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1조의 2,3,4,5)
- 마.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사무처리비 공제제도를 신설 (안 제61조)
- 바.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년차별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 (안 부칙)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 세워서 작성한것)를 군수(참조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기 바랍니다.
(전화 820-2182, 2183)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재

양주군군세조례

[1991. 12. 31
조례 제1410호]

전문개정 1998. 7. 9 조례 제1677호

개정 1999. 2.13 조례 제1696호

개정 1999. 6.14 조례 제1711호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군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세목) ①군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민 세
2. 재 산 세
3. 자 동 차 세
4. 농 지 세
5. 담배소비세
6. 도 축 세
7. 종합토지세

③목적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세
2. 사업소세

제 4 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한 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 5 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주군군세부과징수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추 3)

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자
5. 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③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로 한다.

⑤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부과장수

제10조(부과장수사무의 위임) 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군세의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제87회 제9장 제9부 『정부과세법제조례』

| 규
분 | 세
액 |
|---|----------|
| 차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차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법 제24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500,000원 |
| 차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350,000원 |
| 차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차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 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200,000원 |
| 차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 이하인 법인과 차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무소등의 종업원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법인 | 100,000원 |
| 기타 법인 | 50,000원 |

② 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소득세율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2. 법인세율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3. 농자세율 : 농자세액의 100분의 10

제22조(신고납부) ① 법인세율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법인세율 또는 국제기본법인세 외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령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30일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 또는 수령 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종세액이 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규칙사업년도에 불구

제6편 세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 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 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간의 만료일
4.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 할, 소득세 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23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 할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 할을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이를 수정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 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 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율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절 재산세

제24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군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5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군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을

(추 2)

제6편 재무 제 1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 기 분 | 기 간 | 납 기 |
|---------|---------------|-----------------|
| 제 1 기 분 | 1. 1 ~ 6. 30 | 6. 16 ~ 6. 30 |
| 제 2 기 분 | 7. 1 ~ 12. 31 | 12. 16 ~ 12. 31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③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 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개정 '99. 6. 14)

1. 1월 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40조(수시 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군수는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년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2이상의 시·군에 있는 농지에서 생기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 합 계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 소득과 법 제 209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7조(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과 세 표 준) | 〈세 율〉 |
|------------|--------------------------------------|
| 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 |
| 400만원 초과 | 12만원 + 400만원 초과 |
| 1,000만원 이하 | 금액의 100분의 16 |
| 1,000만원 초과 | 108만원 + 1,000만원 초과 |
| 2,500만원 이하 | 금액의 100분의 27 |
| 2,500만원 초과 | 513만원 + 2,500만원 초과 |
| 5,000만원 이하 | 금액의 100분의 38 |
| 5,000만원 초과 | 1,463만원 + 5,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0 |

제48조(농지의 변동신고등) ①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번·면적·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지의 소유자가 변동된 때
 2. 농지의 경작자가 변동된 때
 3. 농지가 농지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 ② 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중간예산) ① 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2회 군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② 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 소득을 근거로 군수가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 예납하여야 한다.

(추 3)

제6편 계무 제1장 세무 양주군군세조례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 대상반출을 구분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제조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제조담배의 품종
4. 1일평균 생산능력 또는 평균수입량
5. 제조 또는 수입판매 영업개시일자
6. 제조담배 보관창고의 주소 및 위치도면
7. 주민등록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8. 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또는 등록증 사본
9. 기타 참고사항

제60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제61조(신고납부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를 관할하는 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 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를 수입제조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군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제조담배의 품종·수량·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2조(기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

(주 3)